

“남포교회 글로리아 성가대(제 3 부)” 회칙

제정 : 2019.02.01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

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포교회 “글로리아 성가대(이하 ‘성가대’)”라고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

- ① 본 성가대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남포 교회의 주일 3부 찬양을 담당한다. 또한 교회 공식 행사를 맡았을 시 이를 수행한다.
- ③ 본 성가대의 대원들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여, 교회공동체의 목적을 이루어간다.

제 2 장 대 원

제 3 조 (대원의 의무)

- ① 대원은 예배위원으로서 은혜로운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성실히 예배를 준비한다.
- ② 대원은 회칙과 제 규정 등 성가대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.
- ③ 대원은 정해진 연습시간 엄수 및 주일 예배 찬양, 성가대 공식 행사에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.
- ④ 대원은 연간 80%이상(연 42 주) 성가대 예배 찬양에 참여하여야 하며 장기 결석 시에는 파트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.
- ⑤ 대원은 대원간에 상호존중과 배려를 하며, 화합을 깨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⑥ 대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.

제 4 조 (대원의 구분)

- ① 대원은 정회원, 휴면대원으로 구분한다.
- ② 대원의 정의와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 1. 정회원 : 성가대의 각 파트의 대원을 말한다. 제 5 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.
 2. 휴면대원 :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이듬해 의무를 다하지 못할 정회원은 매 연말 본인의 신청과 임원 회의를 거쳐 휴면대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사유 소멸 시 정회원의 자격을 다시 얻는다.

제 5 조 (자격 및 입회절차)

성가대 대원의 자격은 다음 각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- ① 대원의 자격은 세례 교인으로서, 교회를 등록한지 1년 이상 경과된 자여야 한다. 또한 음악적 소양이 있으며, 찬양함을 귀하게 여기는 자라야 한다.
- ② 대원은 성가대 봉사를 교회 모든 봉사 중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.
- ③ 신입 대원은 지휘자와 파트장의 인원 요청에 따라 총원될 수 있으며, 찬송가 시창을

통해 지휘자로부터 파트를 배정 받는다.

- ④ 신입 대원은 본 회의 회칙에 동의하는 약정서(혹은 서약서)를 제출함으로써 입회가 가능하다.
- ⑤ 신입 대원은 4 주의 준비 기간을 두며, 이 기간 중 성실히 성가대 활동에 참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원 회의를 거쳐 정회원으로 승인된다. 준비 기간 중 대원은 찬양 연습에 참여하여야 하며, 예배 찬양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.

제 6 조 (휴면대원 및 운영)

- ① 대원이 건강이상, 장기 여행 등 타당한 사유로 연간 20%(10 주) 이상 성가대 봉사(찬양연습 및 예배찬양 기준)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나, 불출석이 예상되는 경우, 휴면대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.
- ② 임원은 매해 2월에 그 해 활동할 성가대원의 총수(정회원 및 휴면대원)를 확정하되 그 운영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 - 1. 임원은 기존 정회원의 지속 활동 여부를 확인한다. 이 때 정회원은 그 해 타 부서 봉사와의 시간 중복 여부, 우선적 성가대 봉사 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속 봉사여부, 휴면전환, 탈퇴 등을 임원에게 알려야 한다.
 - 2. 임원은 전년도 휴면대원에게 해당년도 복귀 여부를 확인한다.
 - 3. 임원은 신입 대원을 공지, 모집한다.

제 7 조 (자격상실)

-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대원의 경우,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원 자격을 상실한다.
 - 1. 사전 통보 없이 연속 8 주 이상 성가대에 불참한 경우
 - 2. 교인 및 성가대원으로서 의무와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
 - 3. 본인이 탈퇴를 요청한 경우
- ② 자격상실 대상 대원은 소명할 수 있다. 이때 본인 소명서를 제출하고 임원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.

제 3 장 조 직

제 8 조 (임원)

성가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① 대장 : 1 명
- ② 총무 : 1 명
- ③ 회계 : 1 명
- ④ 지휘자 : 1 명
- ⑤ 반주자 : 2 명
- ⑥ 파트장 : 4 명(각 파트별 1 명)
- ⑦ 악보담당 : 1 명
- ⑧ 성가복 담당 : 1 명
- ⑨ 청년 리더 : 1 명

제 9 조 (임원의 선출)

- ① 대장은 전임 대장의 위촉으로 교회에서 임명한다.
- ② 그 외의 임원은 대장이 위촉하고 피위촉자의 자발적 동의를 거쳐 선임된다.

제 10 조 (임원의 임기)

- ① 임원의 임기는 매년 3월 1 일에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② 대장의 궐위 시에는 안수집사 및 임원 회의를 통해 위촉하며, 대장을 제외한 임원의 궐위 시에는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.
- ③ 후임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.

제 11 조 (임원의 역할)

- ① 임원은 예배 찬양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자의 지휘와 대원들의 연습 및 찬양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지 보살피고 돕는다.
- ② 대장은 본 성가대를 대표하여, 운영전반을 총괄한다.
- ③ 총무는 대장을 보좌하며, 연습과 모임관련 회의를 준비하고, 대장 유고 시 성가대를 대표하며, 전반적인 대원의 출결 및 제반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.
- ④ 지휘자는 성가대의 음악적인 부분을 총괄 지도한다.
- ⑤ 반주자는 지휘자와 함께 연습 및 예배의 반주를 담당한다.
- ⑥ 회계는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모든 관리의 책임을 지며, 예산의 편성 집행, 결산을 담당하며 임원회의와 성가대에 이를 보고한다.
- ⑦ 파트장은 각 파트를 대표하여 파트대원을 관리하며(출결 등) 신입 대원에 대한 멘토 지정을 통해 신입대원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
- ⑧ 악보 담당은 연습 및 예배관련 악보지원 등을 담당하고 아울러 지휘자를 보좌하여 연습 및 연주 용 악보 편집 및 준비 업무 등을 담당한다.
- ⑨ 성가복 담당은 예배를 위한 성가복의 준비와 관리를 담당한다.
- ⑩ 청년 리더는 청년 대원의 친교, 출결 등을 관리한다.

제 4 장 회 의

제 12 조 (글로리아 데이)

글로리아 데이는 매년 회기 말 전에 대장이 소집하며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.

- ① 사업 및 결산보고
- ② 회칙의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
- ③ 신규 선임 임원 소개
- ④ 기타 안건 처리 및 행사

제 13 조 (임원 회의)

임원 회의는 대장 또는 지휘자가 성가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안건에 따라 인원을 구성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 5 장 재 정

제 14 조 (회계연도)

본 성가대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로 한다.

제 15 조 (관리)

본 단체의 모든 재정은 성가대 단체명의로 수입, 지출되며 단체명의로 제1금융권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. 단 단체명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할 시 임원 의결을 거쳐 회계명의로 개설하여 관리 할 수 있다.

제 16 조 (수입)

본 성가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- ① 운영비 : 본 교회의 3부 성가대 운영 예산으로 분기별 결산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회비 : 임원회의에서 금액을 결정하며, 납부방법은 연납부를 원칙으로 한다.
- ③ 후원회비 : 지정헌금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은 분기별 결산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17 조 (지출)

제 16 조에 의한 수입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임원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용처에 지출하도록 하며, 성가대의 해산 시 모든 재정은 대원 개인에게 분배 및 지급할 수 없고,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되 그 사용처는 임원 발의 및 대원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.

- ① 연습 및 예배준비에 사용되는 비용
- ② 기타 성가대의 공식 행사 및 준비에 부합되는 사용처로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사항

부 칙

1. 본 회칙은 제정일인 2019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.